#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송옥주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3601

발의연월일: 2020. 9. 8.

발 의 자: 송옥주·양정숙·김영주

안호영 · 송재호 · 임종성

아슈진비 · 윤미향 · 박성준

김민철 • 전혜숙 • 박상혁

노웅래 · 정필모 · 김종민

의원(15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친환경 정책에 따라 전기자동차 보급과 태양 광 발전시설 설치가 확대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폐배터리, 폐패널 등 새로운 유형의 전자 폐기물 발생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

전기자동차 폐배터리, 태양광 폐패널 등은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하지 않을 경우 유해성과 폭발성이 높은 특성으로 인해 안전사고의 위험성이 높으며, 유용한 자원의 회수를 통한 재활용 활성화도 어렵게되기 때문에 이러한 폐자원을 대상으로 한 민간중심의 재활용체계가정착되기 전까지는 공공 인프라를 구축하여 선제적으로 관리해나갈필요가 있음.

이에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를 설치 · 운영하여 전기자동차 폐배

터리, 태양광 폐패널 등 새로운 유형의 전자 폐기물의 회수·보관·성 능평가·민간공급 등을 안전하고 체계적으로 수행토록 지원하기 위한 것임(안 제20조의4 신설).

아울러 태양광 패널이 전기·전자제품 재활용의무생산자의 회수· 인계·재활용의무 대상 전기·전자제품 및 전기·전자제품 판매업자 의 회수의무 대상 전기·전자제품에 포함됨에 따라 전기·전자제품의 정의에 태양광 패널을 반영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

###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법령·예산 및 기금운용계획 등에 따라 이미 비용이 발생하고 있는 경우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서 추가적인 재정수반 요인을 포함하고 있지 아니함.

##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전기·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작동하는"을 "작동하거나 이러한 전류와 전자기장의 발생, 이동, 전송 또는 측정하는"으로 한다.

제20조의4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제20조의4(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의 설치·운영) ① 환경부장관은 전기자동차 폐배터리, 태양광 폐패널 및 2차 전지가 포함된 환경부 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이하 이 조에서 "폐배터리등"이라 한다)의 회수·보관·재활용을 위한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이하 이 조에서 "거점수거센터"라 한다)를 설립할 수 있다.
  - ② 거점수거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 1. 폐배터리등의 회수・보관・재활용에 관한 업무
  - 2. 폐배터리등의 성능평가 및 매각에 관한 업무
  - 3. 폐배터리등의 재활용 촉진을 위한 통계조사 및 연구개발에 관한 업무
  - ③ 환경부장관은 거점수거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④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거점수거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혅 했 개 정 아 제2조(정의) (생 략) 제2조(정의) (현행과 같음) 1. "전기·전자제품"이란 전류 1. ------나 전자기장에 의하여 작동하 -----작동하거 는 기계・기구(부분품・부속품 나 이러한 전류와 전자기장의 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발생, 이동, 전송 또는 측정하 2. ~ 7. (생략) 2. ~ 7. (현행과 같음) 제20조의4(미래폐자원 거점수거 <신 설> 센터의 설치・운영) ① 환경부 장관은 전기자동차 폐배터리, 태양광 폐패널 및 2차 전지가 포함된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폐기물(이하 이 조에서 "폐배 터리등"이라 한다)의 회수・보 관·재활용을 위한 미래폐자원 거점수거센터(이하 이 조에서 "거점수거센터"라 한다)를 설립 할 수 있다. ② 거점수거센터는 다음 각 호 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폐배터리등의 회수·보관· 재활용에 관한 업무 2. 폐배터리등의 성능평가 및

매각에 관한 업무

- 3. 폐배터리등의 재활용 촉진을

   위한 통계조사 및 연구개발에

   관한 업무
- ③ 환경부장관은 거점수거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 ④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거점수거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환경부령으로 정한다.